


의정활동보고서



제253회 임시회(2012. 3. 13 ~ 3. 22)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었던 대지에 생명이 피어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25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봄은 늘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상징하는 계절입니다만,
금년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양대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양대 선거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 단합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그동안 지연되어 온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우리들의 소망들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목소
리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올 1년을 경영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에 이어 원유값 인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투자와 내수가 위축되는 등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의 실행계획 수립, 새학기 준비 등 당면한 업무 추진에 바쁘실 줄 압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는 3월 15일에는 한미 FTA가 발효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농축산업,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보호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매우 알찬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심의될 의안 13건 중 10건이 의원발의 안건이며, 그 내용도 일자리 창출 촉진, 소상공인보호, 학교폭력 예방, 관광진흥 등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거나 서민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건들입니다.

그동안 도민을 위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같이 생산적인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주시고,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相 孝

차 례

I. 개	황	149
II. 의사일정		152
III. 의안처리		157
IV. 민원처리		159
V. 본회의 보고사항		161
VI. 5분 자유발언		177
□ 황이주 의원(기획경제위원회/울진)		177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안동)		181

부 록

- 조례안 : 12건(원안가결 8, 수정가결 4건) 187
- 결의안 : 1건(원안가결) 248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53회 임시회는 2012년 3월 1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3월 22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3월 13일(화) 오후 2시에 개의하였고,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뒤이어 이어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교육의원회 홍광중 의원이 낙동강유역 친수공간 개발과 관련하여 낙동강 유역의 어족자원복원·자전거도로 시설정비, 자전거도로의 무궁화식재·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한 질문과 도내 산림정책 및 산림자원에 관한 질문에 이어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언어순화 정책에 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고,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의원은 3대 문화권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 유교문화 및 유교정신 계승, 의원입법기능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문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3월 14(수)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도 4명의 의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의원의 경북도의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동해안권 발전 계획과 포항 영일만항 건설 추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월파와 바닷물 유입관련, 도청 신도시 지역의 여성친화

도시(Women Friendly City) 조성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관련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문화환경위원회 박병훈 의원은 축산 대책, 경북농업정책, 공유재산 관리대책, 국제회의도시 육성, 한수원 본사 및 방폐장, 학교상담교사 확보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 박권현 의원은 도내 시내·외 버스회사 운영실태 및 재정 지원, 경북도립대학 기성회계와 신설학과, 신품종 종자산업 육성 및 정부보급종 봄감자 확보방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과 예방사업, 청도 소싸움 개장에 따른 레저세 감면, 중·고등학교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의원은 한·중 FTA체결에 대비한 경상북도의 농·어업 대책, 남녀 교원 성비 불균형 문제, 초임교사 배치 지역 편중현상에 대해 질문하는 등 의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정 및 사회전반에 걸친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고 집행부 관계자들은 각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으로 2차 본의회를 마쳤다.

또한 3월 22일 11시에 개의한 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황이주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이어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안 심사에서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일자리 창출촉진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환경교육진흥조례안',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조례안' 등 4건이 수정 가결되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전체 13건의 조례 중 10건이 위원회 및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알차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었다.

또한, 본회에 앞서 실시된 상임위별 조례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심사 조례안”이 심사 유보되었다.

이 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도의원 해외연수와 의원발의 입법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 사무처리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포항의료원을 방문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한중 FTA 대책 및 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고령 딸기고설 육묘장과 FTA 발효후 농산물 가격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는 신장중, 김천여고를 방문하여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 경산중, 김천중앙중학교를 방문하여 수준별이동수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2년 3월 13일(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2년 3월 13일 ~ 3월 22일(10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41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7	1	1	1	1	1	-	1		1
누 계	235	19	31	31	25	22	29	24	29	25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13(화) 14:00 (제1차)	☐ 개회식 ☐ 안건처리 ○ 제25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홍광중 의원(교육위원회) ○ 도기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	
3. 14(수) 11:00 (제2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채옥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박병훈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박권현 의원(농수산위원회) ○ 윤성규 의원(건설소방위원회)	
3. 22(목) 11:00 (제3차)	☐ 5분 자유발언 ○ 기획경제위원회 황이주 의원(울진) ○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의원(안동) ☐ 안건처리 ○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3. 22(목) 11:00 (제3차)	○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청 무료법률상담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14(수) 13:00 (제1차)	☐ 안전심사 ○ 제254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14(수) 16:4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지원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19(월) 10:3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조례안 ☐ 현지방문 ○ 포항 의료원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20(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14(수) 16:3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3. 22(목)	☐ 현안사항 보고 ○ 한-미 FTA, 한-중 FTA 대책보고 ○ 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 추진상황 보고 ☐ 현장방문 ○ 고령 딸기고설 육묘장 등 현장방문 ○ FTA 발효후 농산물 가격동향(대형마트)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14(수) 16:3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상담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19(월) ~ 3. 20(화)	☐ 현지확인 ○ 교과교실제운영(신상중, 김천여고) ○ 수준별이동수업(경산중, 김천중앙중)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3. 13(화) 11:00 (제1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2012년도 서민경제 업무보고	

Ⅲ. 의안처리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6 (232)	14 (226)	10 (180)	4 (44)	(2)		1 (3)	1 (3)	
조 례 안	소 계	14 (130)	12 (124)	8 (92)	4 (30)	(2)		1 (3)	1 (3)	
	의 회 제 안	11 (43)	9 (39)	6 (30)	3 (9)			1 (2)	1 (2)	
	도지사 제 출	2 (66)	2 (64)	1 (46)	1 (17)	(1)		(1)	(1)	
	교육감 제 출	1 (21)	1 (21)	1 (16)	(4)	(1)				
규 칙 안		(2)	(2)	(2)						
예산·결산		(13)	(13)	(4)	(9)					
동의·승인		(22)	(22)	(19)	(3)					
건 의 안		(3)	(3)	(3)						
결 의 안		1 (22)	1 (22)	1 (20)	(2)					
기 타 안		1 (40)	1 (40)	1 (40)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3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12. 2. 24, 강영석 의원, ’12. 3. 14, 행정보건복지위
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누 계	3		3	3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4 (53)	(8)	1 (9)	(7)	1 (17)		1 (4)	(3)	(1)	1 (4)
의 회 운 영										
기 경 획 제	1						1			
행 정 보건복지	1		1							
문 화 환 경										
농수산										
건 설 소 방	2				1					1
교 육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4 (53)	4 (48)			(5)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행 정 보건복지	1	1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2	2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2011. 6. 1부터 타기관 민원은 상임위 회부전 이송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3건(조례안 12, 결의안 1)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강영석 의원 등 39명 (‘12. 2. 24)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 (‘12. 3. 5)
경상북도지사 (‘12. 2. 29)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
김영기 의원 등 17명 (‘12. 2. 29)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도기욱 의원 등 24명 (‘12. 2. 29)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진현 의원 등 26명 (‘12. 3. 2)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12. 2. 29)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12. 3. 5)
정영길 의원 등 50명 (‘12. 2. 29)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
김창숙 의원 등 24명 (‘12. 3. 9)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 (‘12. 3. 9)
박병훈 의원 등 36명 (‘12. 3. 2)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문화환경 (‘12. 3. 5)
장경식 의원 등 26명 (‘12. 3. 2)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
한창화 의원 등 26명 (‘12. 2. 23)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농수산 (‘12. 3. 5)
추재천 의원 등 32명 (‘12. 2. 29)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교육 (‘12. 3. 5)
경상북도교육감 (‘12.2.29)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11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2. 2. 20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 2. 27 (제3305호)
"	"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	" (제3306호)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07호)
"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08호)
"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 3. 5 (제3309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310호)
"	"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	" (제3311호)
"	"	경상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312호)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313호)
"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14호)
"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315호)

3. 기타 의정활동 사항

○ 도-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MOU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2. 02. 16(목)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상용 위원장, 박권현 의원

○ 경북농어업 제9차 FTA 전체회의 참석

- 일 시 : 2012. 02. 16(목) 15: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한창화 의원, 강영석 의원

○ 제1회 ‘필통톡’ 참석

- 일 시 : 2012. 02. 17(금) 16:00
- 장 소 : 장산중학교
- 참 석 : 서정숙 의원

○ 포항여자중학교 및 학천초등학교 졸업식 참석

- 일 시 : 2012. 02. 18(토) 10:00
- 장 소 : 포항여자중학교, 학천초등학교
- 참 석 : 김원석 의원

○ 경상북도 특전동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2. 18(토) 14:00
- 장 소 :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 참 석 : 구자근, 박태환 의원

- **경북 옥외광고협회 사무실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0(월) 11:00
 - 장 소 : 포항시 해도동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제15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02. 20(월)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의원
-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장학금 전달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0(월) 11:30
 - 장 소 : 경북지사 사무실
 - 참 석 : 최우섭 의원
- **한국 노인 복지중앙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2. 20(월) 13:5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청송군 장애인 협회 지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0(월) 12:00
 - 장 소 : 청송군민회관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 경상북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2. 02. 20(월)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구자근 의원

○ 한국노총 포항지회 총회 참석

- 일 시 : 2012. 02. 21(화) 10:30
- 장 소 : 한국노총 포항지부 지역본부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쌀 전업농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1(화) 11:00
- 장 소 : 농업인 회관 강당
- 참 석 : 이상용 위원장, 나기보, 박기진 의원

○ 경상북도 상인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02. 21(화) 11:00
- 장 소 : 영주 남서울예식장
- 참 석 : 박성만 의원

○ 위덕대학교 학위 수여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2(화) 10:00
- 장 소 : 위덕대학교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대송면 자생단체 2월맞이 율놀이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2. 02. 22(수) 10:00
 - 장 소 : 포항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
 - 참 석 : 채옥주 의원
- **제7차 세계물포럼 대구경북 유치 성공기념 “맑은물천지
가꾸기추진위” 창립 총회 참석**
 - 일 시 : 2012. 02. 22(수) 10:00
 - 장 소 : 대구대학교 본관강당
 - 참 석 : 김세호 의원
- **2012년도 전국 식품안전관리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02. 23(목) 13:00
 - 장 소 : 문경STX리조트
 - 참 석 : 이시하 의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3(목) 14:00
 - 장 소 :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 참 석 : 한창화 의원
- **경상북도 사립유치원 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4(금) 12:00
 - 장 소 : 구미 금오산 호텔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박태환, 심정규, 최우섭 의원

- **국립영천호국원 충령당(제2관) 준공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4(금) 14:00
 - 장 소 : 영천호국원
 - 참 석 : 김수용, 한혜련 의원
- **경산 자인향교 춘계 석전대제 참석**
 - 일 시 : 2012. 02. 26(일) 09:30
 - 장 소 : 경산 자인향교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영식, 윤성규 의원
- **2012년 군위농공단지 정기총회 및 회장단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7(월)
 - 장 소 : 군위공단 내 복지회관 2층 회의실
 - 참 석 : 홍진규 의원
- **2012년 안동시 노인일자리사업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2. 2. 27(월)
 - 장 소 : 안동시민회관
 - 참 석 : 이영식 의원
- **경상북도 의정회 방문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02. 27(월) 10:30
 - 장 소 : 경상북도 의정회 사무실
 - 참 석 : 김세호 의원

- (사)경상북도 환경포럼 이사회 및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02. 27(월) 11:00
 - 장 소 : 구미 환경연수원
 - 참 석 : 변우정 의원
- 포항제철고등학교 기숙사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7(월) 11:00
 - 장 소 : 포항제철고등학교
 - 참 석 : 김희수 의원
- 경북 새마을 회장 이·취임식
 - 일 시 : 2012. 02. 27(월) 15:00
 - 장 소 : 구미시 민방위 교육장
 - 참 석 : 박태환 의원
- 2012년 6·25참전유공자회 경북지부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02. 28(화) 11:00
 - 장 소 : 안동 실내 체육관
 - 참 석 : 김명호, 이영식 의원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02. 28(화) 12:00
 -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 참 석 : 박병훈 의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기 간 : 2012. 02. 28(화) ~ 2. 29(수)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8(화) 18:00
 - 장 소 : 영천상공회의소
 - 참 석 : 김수용, 한혜련 의원
- 소방정책설명회 및 국민생명보호정책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02. 29(수)
 - 장 소 : 포항남부소방서 대회의실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이정호, 장두욱 의원
- 남성욱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 통일공감 강연회 참석
 - 일 시 : 2012. 02. 29(수) 14:00
 - 장 소 : 포항 효자아트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김말분, 이경임, 추재천 의원
- 포항 곡강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02. 29(수) 14:00
 - 장 소 : 포항 곡강천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의원

○ 경상북도 지역 치안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 일 시 : 2012. 02. 29(수) 14:00
- 장 소 : 경상북도경찰청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제93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2. 03. 01(목) 10:00
- 장 소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호 의장, 송필각 부의장, 김희원, 추재천 의원

○ 3.1절 애국지사 장진홍 의사 추념식 참배

- 일 시 : 2012. 03. 01(목) 10:00
- 장 소 : 구미시 옥계동 3.1공원
- 참 석 : 심정규 의원

○ 3·1절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2. 03. 01(목) 10:00
- 장 소 : 영주시 풍기체육관
- 참 석 : 김종천 의원

○ 3·1절 맞이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참배 참석

- 일 시 : 2012 03. 01(목) 10:30
- 장 소 : 의성군 종합운동장 옆 항일독립운동기념탑
- 참 석 : 나현아 의원

- 제93회 3·1절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1(목) 10:30
 - 장 소 : 포항 3·1절 만세촌 광장
 - 참 석 : 장경식·장세헌 위원장, 김말분, 김희수, 장두옥 의원
- 경상북도 재향군인회 제53차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2(금) 10:00
 - 장 소 : 호텔인터불고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이용진, 정영길 의원
- 대구가정법원 승격 개원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2(금) 11:00
 - 장 소 : 대구 지방법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5기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2(금) 16: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효 의장
-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2(금) 18:00
 - 장 소 : 안동 축협하나로마트(북향)
 - 참 석 : 도기욱 의원

- 전통시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3(토) 11:00
 - 장 소 : 상주 중앙시장
 - 참 석 : 강영석, 한재석 의원
-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3(토) 15:00
 - 장 소 : 고령 대가야국악당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곽광섭 의원
- 제24회 경상북도 검도회장배 검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4(일) 11:00
 - 장 소 : 황성공원
 - 참 석 : 이 달, 박병훈 의원
- 경북도립대학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5(월) 10:00
 - 장 소 : 경북도립대학 문화체육관
 - 참 석 : 김종천, 이경임, 정상진 의원
-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 읍면 순회 리더 교육 참석
 - 일 시 : 2012 03. 05(월) 10:00
 - 장 소 : 봉화읍사무소
 - 참 석 : 권영만 위원장

○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 개원식 및 입학식 참석

- 기 간 : 2012. 03. 05(월) 11:00
- 장 소 :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2층 학술세미나실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6(화) 11:00
- 장 소 : 청도군청 지하상황실
- 참 석 : 김하수 의원

○ 경북 경영자 총연합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6(화) 11:00
- 장 소 : 구미 센츄리 호텔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구자근, 변우정 의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수료식 및 개강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6(화) 14:00
- 장 소 : 안동 안동대학교
- 참 석 : 이상효 의장

○ 봉화군 외식업지부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6(화) 15:00
- 장 소 : 봉화웨딩
- 참 석 : 권영만 위원장

-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 수료 및 개강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6(화) 14:00
 - 장 소 : 안동대 솔피 문화관
 - 참 석 : 이상용 위원장, 김명호, 이영식, 이왕식, 정상진,
홍광중 의원
- **제20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7(수) 11:00
 - 장 소 : EXCO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문경소방서 호계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3. 07(수) 11:00
 - 장 소 : 문경시 호계면사무소 대회의실
 - 참 석 : 고우현 위원장
- **도청이전신도시 전통문화도시 만들기 정책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7(수) 14:00
 - 장 소 : 안동시청 회의실
 - 참 석 : 김명호, 이영식, 홍광중 의원
- **2012년도 어린 연어 방류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03. 07(수) 14:00
 - 장 소 : 영덕 송천강
 - 참 석 : 박진현, 전찬걸 의원

○ 원전안전점검 및 방폐장 추진상황 점검회의 참석

- 일 시 : 2012. 03. 07(수) 14:30
- 장 소 : 경주 월성원전 및 방폐장
- 참 석 : 황이주 의원, 이 달 의원

○ 제30회 회장기 경상북도 사격대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7(수) 18:00
- 장 소 : 포항 청솔밭뽕페 컨벤션홀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김희수 의원

○ 도민 참여교육 참석

- 일 시 : 2012. 03. 08(목) 14:00
- 장 소 : 김천시 여성회관 3층
- 참 석 : 배수향 의원

○ 경상북도 교향악단 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8(목) 19:00
- 장 소 : 영천시민회관
- 참 석 : 김수용, 한혜련 의원

○ 제15회 영덕 대게축제 참석

- 일 시 : 2012. 3. 9(금)
- 장 소 : 삼사해상공원
- 참 석 : 김기홍, 박명훈 의원

- 대구·경북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03. 09(금) 14:00
 - 장 소 :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경산시 생활체육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03. 10(토) 15:3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창숙, 윤성규 의원
- 2012 경주시 육상경기 연맹 회장 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참석
 - 일 시 : 2012. 03. 11(일) 08:30
 - 장 소 : 경주시민운동장
 - 참 석 : 최학철 의원
- 2012 구미인동 3·1 문화제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03. 12(월)
 - 장 소 : 구미시 진미동사무소앞
 - 참 석 : 장영석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2년 3월 22일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황이주 의원(울진) ◎

<<방폐장 탈락지역 영호남 차등지원 자료 폭로>>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까지 모두 네 차례의 자유발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모두 원전과 관련된 발언들이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원전 문제로 제가 단상에 서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원전의 안전대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피해,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도 해법이라고 하는 대책을 수없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대책 안에는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넘어 과신이 배어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블랙아웃 사고

입니다. 이것은 분명 인재였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한수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직무 태만이 불러온 사태입니다. 따라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원전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감시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도 원전의 안전정책 수립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방폐장 유치 탈락에 대한 지원사업의 심각한 지역 편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2005년 방폐장이 경주로 결정나자 이듬해 정부가 후속대책이라며 탈락지역에 대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작성한 비밀문건입니다.

문제는 지원사업에 대한 심각한 지역편중에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전북이 3,500여 억원인데 반해서 우리 경북은 250억원에 불과합니다. 영덕이 50억원, 포항이 200억원인데 반해 부안은 1,600억원, 군산은 1,900억원이 넘습니다. 영덕이 82억원을 들여 풍력홍보관을 지었고 포항이 사업을 변경해서 206억원으로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지었던 만큼 전북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부안의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자료입니다. 모두 1,000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무엇입니까?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지원대책입니다.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전북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를 비난하지도, 전북도를 질타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정부 정책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잘못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치밀함과 정권을 잘 활용한 정치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대형프로젝트의 정부 정책화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 지사님과 간부들이 전방위 노력을 쏟겠다고 한 언론매체의 기사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 하나 있습니까?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36건에 무려 15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용정부 마지막 해,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우리가 아닌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9,979억원인데 반해 우리 경북은 1,829억원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어봅시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이 중심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매진합시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살기

좋은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도민이 행복해 하는 경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명 호 의원(안동) ◎

<<도청 신도시에 국립 소방방재박물관 유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건설하고 있는 도청신도시에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소방박물관이 없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소방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안전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이나, 선진사회 어린이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소방관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장래희망 조사에서 소방관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합니다. 3월초에 방영된 TV프로그램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소방관도 과학자도 대통령도 아닌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봉사적 삶이 갖는 숭고한 의미를 자녀교육에서 중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 삶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의사와 위험이 따르는 직업을 기피하는 기성의 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된 결과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2003년에 제정된 <소방기본법> 제5조에는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

방재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차원의 소방방재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5천년의 재난극복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유물과 사료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설립을 계획했습니다. 국비 95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30만㎡에 건축연면적 2만 5천㎡의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7개의 상설전시관과 특별기획전시관, 야외테마 Zone 등으로 구성하고, 3D에서 4D, 5D에 이르는 최첨단 입체 영상관까지 갖추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소방방재박물관을 설립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장벽에 부딪혀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설립계획은 입안단계에서 무산되었고, 시도별 소방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본 의원은 금년 대선정국이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설립사업을 재점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야심차게 건설하고 있는 명품신도시와 연계하여 모색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적어도 현 정부보다는 더 분권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국내 최고의 친환경생태도

시로 건설하는 명품도청 신도시에 33만㎡의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유치하여 안전문화의 메카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여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이 전국 초중고의 수학여행 필수코스로 선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청신도시에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 봉사, 생명존중이라는 안전문화를 고취하는 교육장으로서의 국립소방방재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영남인의 기개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르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도시건설 사업에도 시너지효과를 주게 될 것입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의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경북개발공사의 입장에서라도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유치는 사업에 탄력을 보태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경북소방학교에 덧붙여 소방R&D 시설과 소방연구소 및 소방연수원 등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서는 빠른 시간 내에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총선정국이 끝남과 동시에 정치(精緻)한 논리로 무장된 구체적인 접근전략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선공약집에 '경북도청 신도시에 국립소방방재박물관 설립'이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고 다이

내믹한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2건(원안가결 8, 수정가결 4)
- 결의안 : 1건(원안가결)

■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안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청 무료법률 상담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 감사관실, <u>보건복지여성국</u>, 행정 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 대학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 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4~7. (생략)	제 3 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 <u>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u>, 4~7.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 1 조(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 3 조(도 등의 책무) ①경상북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기본계획수립 등)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는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어린이 안전교육) ①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 7 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①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 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8 조(지원)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통학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형유통기업”을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
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시행”을 “해마다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
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3의2. 준대규모점포 대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년”을 “해마다”로 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중 “대형유통기업”을 각각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u>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u>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 <u>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u>와 …… …… …… …… …… …….
제 2 조(정의) (생략) 1. (생략) 〈신 설〉 2·3. (생략) 4. “상생협력”이란 <u>대형유통기업</u>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 2 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2. “<u>준대규모점포</u>”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4. … <u>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u> …… …… …… …….
제 3 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대형유통기업</u>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제 3 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 <u>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u>…………… …… …… ……

현행	개정안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1~4. (생략) 5. <u>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고에 관한 사항</u> 〈신설〉 〈신설〉	 해마다 수립·시행.....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u> 6. <u>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③도지사는 <u>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제 4 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3. 제6조에 따른 <u>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4~6.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3. (생략) 〈신설〉	제 4 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1·2. (현행과 같음) 3. <u>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u> 4~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u>3의2. 준대규모점포 대표</u>

현 행	개 정 안
4·5. (생략) 6. <u>재래시장 대표</u> 7·8. (생략) 제 5 조(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u>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1.~6. (생략) 〈신 설〉 〈신 설〉 제 6 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u>대형유통기업</u>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5. (생략) ② (생략) ③도지사는 상생협력에 기여한 <u>대형유통기업</u>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4·5. (현행과 같음) 6. <u>전통시장</u> ···· 7·8. (현행과 같음) 제 5 조(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①<u>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u>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u>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6 조(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 <u>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u>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등</u>·····

현행	개정안
홍보하는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u>대형유통기업</u>, 소상공인 및 기타 상인의 협력 실적을 <u>매년</u> 발표하여야 한다.	 ④..... <u>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u> <u>해마다</u> <u>.....</u>.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폐차업의 등록기준)”을 “(해체재활용업의 등록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폐
차”를 각각 “해체재활용”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사업장의 위치는”을 “사업장의 위치는 10m 이
상의 도로에 접하여”로 한다.

제3조, 제8조, 별표 2 및 별표 3 중 “폐차”를 각각 “해체재활용”
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등록신청 사항은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7 조(폐차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폐차업(이하 “폐차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생략) 4. 폐차사업자는 별표 5에 의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동 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해체재활용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장의 위치는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3. (현행과 같음) 4. 해체재활용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 정책 수립 시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
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제 4 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해외취업, 중소기업 인턴제, 고졸 채용, 대학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2.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3.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취업서비스 지원
4. 기타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일자리 영향 평가) 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도지사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

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 8 조(취업지원) ①도지사는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군 및 도본청 실·본부·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행정·재정지원) ①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③도지사는 경북 일자리창출 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일자리 지원기관의 통합 및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도의 각종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지원) 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군과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경상
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인 이상 30인 이내”를 “40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제21호로 하고,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20.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제1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제21호로 하고, 제19호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20.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수정안 조문 대비표

[illegible]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
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따돌림”이란 「법」 제2조제1호2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
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항의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도지사는”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4 조(학교폭력 발견과 신고의 의무) ①학교폭력과 따돌림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나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학교 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 5 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사업
 2. 가해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치료, 상담사업
 4. 학교폭력 실태와 현상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행동교정, 봉사활동 참여 등
 6.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배치
 8.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의결 및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3. 교육청,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전문가, 제8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③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
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청소년
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
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8 조(실무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9 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2년 3월 19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등을 위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규정하고, 학력 차별적인 용어를 적절하게 수정함.

2. 주요 내용

- 안 제3조제1항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항의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도지사는”으로 함.
- 안 제6조제2항제3호의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경북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함.
- 안 제7조제3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으로 하고,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함.
- 안 제8조의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지역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함.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1항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4항의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도지사는”으로 함.
- 안 제6조제2항제3호의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경북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함.
- 안 제7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를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으로 하고,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를 “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함.
- 안 제8조의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①..... <u>경상북도교육감</u> <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② (생략) ③ (생략) ④ <u>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u> <u>하여</u>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①..... <u>경상북도교육감</u> <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u> <u>경북지방경찰청(이하 “경찰</u> <u>청장”이라 한다)</u>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u>도지사는</u>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된 의견을 반영하여 학 교폭력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대응을 위하여 경 북지 방 경 찰 청 장 을 명시함.
제 6 조(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u>제9조</u> ③.....	제 6 조(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u>제8조</u> ③.....	- 안 제3조 수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 <u>경북지방경찰청장</u> ④..... <u>경북지방경찰청장</u> 제 7 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u>학</u> <u>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u> <u>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u> <u>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u> <u>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u> <u>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1. ~9.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1. <u>위원의 임기가 만료되</u> <u>었을 경우</u>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⑥ (생략)	 <u>경찰청장</u> ④..... <u>경찰청장</u> 제 7 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u>풍</u> <u>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u> <u>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u> <u>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u> <u>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u> <u>한다.</u> 1. ~9.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제정안과 같음) 〈삭제〉 1. (제정안 제2호와 같음)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⑥ (제정안과 같음)	- 학력 차별적 용어 수정 - 안 제3조 수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 8 조(실무위원회) 도지사는 <u>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제 8 조(실무위원회) 도지사는 <u>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u>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안 제3조 수정에 따른 조문 정비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5.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여행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숙박업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6 조(관광객 유치에 위한 회의 등 지원) ①도지사는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행사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참가자가 1일 200명(경상북도민을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행사
2. 제1호에 따른 회의·행사의 참가자가 도내의 숙박업소에서 1일 이상 숙박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
2. 정치 및 종교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제 7 조(지원사항)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정보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기간·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8 조(관광홍보관 운영) ①도지사는 관광홍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광안내를 위하여 관광홍보관을 설치·운영한다.

②관광홍보관의 명칭·소재지·업무·기능·운영방법 등 관광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9 조(관광모니터 운영) ①도지사는 관광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지에서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관광모니터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활동실적이 우수한 관광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관광모니터의 위촉대상·인원·임기·위촉·해촉·운영방법 등 관광모니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위한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
2.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여행
3. 관광홍보관 운영 및 홍보
4.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리
2.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여행사업
3. 박람회 운영
4.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관광숙박시설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2년 2월 20일

제안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6조 중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하는 조문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76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0조 중 『법 제76조』를 『법 제76조제2항』으로 함.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별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별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환경보전을 통하여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 한다.

1.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세대가 이를 유지 계승해 나가기 위한 환경교육의 시행
2.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환경교육의 촉진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제19조 및 「경상북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제28조에 의한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②도지사는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시장·군수의 책무) 시장·군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7 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도 환경교육계획

(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수 방안
7.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8.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9.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감, 시장·군수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관계 기관의 장은 환경교육 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의 추진실적을 조사·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관련 단체 또는 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 제출) ①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환경교육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도 관계

공무원,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환경시민단체 임직원,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3조(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도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녹색환경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 관련 서류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환경교육센터 또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환경 교육기관, 「환경교육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 잠수하여 작업하는 특성과 힘든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¹⁾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지역보건법」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1) 잠수어업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선주와 선원간 고용계약에 의해 채용, 해임되는 관계이며 종사자는 어선원으로 분류되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중 국비 및 도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건강보호를 위한다는 본 조례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 수가 적고 잠수의 깊이나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하여 잠수병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으로 발생한 질환²⁾ 때문에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지원범위)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시책³⁾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진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잠수병은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통계청)상 T70.3 잠함병(감압병)으로 분류되어 있고 잠수병은 신체부위에 따라 순환장애, 근육통, 피부가려움증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질환과 구분이 어려움. 따라서 질병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으로 한정하여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그러나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일반적인 질환이 아닌 잠수병으로 인한 질환임을 증명하는 때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어 잠수어업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표기하고자 함.

3) 나잠어업을 포함한 수산업은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상 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적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고 수산인 안전공제 보장내역에는 입원, 진단, 치료, 수술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일반 수산인과의 형평성 확보 및 이중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도의 지원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차등, 차감지원이 필요함.

제 6 조(자료요청)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8 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①도지사는 진료비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의 허가 및 신고, 변경 신고사항 등을 지정 진료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진료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⁴⁾.

②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잠수어업과 나잠어업은 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처분관청으로부터 인적사항이 포함된 허가 및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므로 진료지원 대상이 되는 잠수어업인 및 나잠어업인의 증명이 가능함. 따라서 행정처분 및 변경자료를 진료기관에 제공하여 지원대상 어업인의 불편해소가 필요함.

제 9 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진료비청구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①도지사는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번호사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상담대상자의 범위) ①상담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 소재 유·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및 학부모로 한다.

②상담대상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 3 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 등과 관련된 교육 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제 4 조(상담방법) ①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

서면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상담시간·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상담변호사는 답변을 위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제 5 조(상담변호사 위촉) 상담변호사는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 6 조(수당)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비밀 누설 금지) 무료법률 상담 신청·접수 및 처리 관계 공무원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료법률 상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동의 제안

■ 김원석 의원입니다.

■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안 제2조제1항의

- “각급 유·초·중·고등학교”를
- “유·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로 하고,
-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 2 조(상담대상자의 범위) ①상담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 소재 <u>각급 유·초·중·고등학교</u> 교직원(사립학교 포함) 및 학부모로 한다.	제 2 조(상담대상자의 범위) ①…………… …………… … <u>유·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u> …………… ……………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3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
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제 3 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경상북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비용추계서에는 비용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⑥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 5 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②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 6 조(협의 및 제출) ①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 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경상북도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 의 안

-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3. .
발 의 자 : 김 창 숙 의원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일제강점기인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미에현 구마노시에 소재한 총알 제조용 구리를 생산하던 광산인 기슈광산에 우리 도와 강원도 등에서 1,300여 명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그 가운데 35명이 사망하였음.
- 이에 기슈광산 강제노역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활동해 온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에서 2010년 3월 추모비를 건립하였으나, 미에현과 구마노시에서 ‘공공성이 없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건립부지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 이와 달리 당시 같은 광산에 끌려왔다가 사망한 영국군 포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희생자 묘비와 추모비를 만들어 주고 매년 위로행사까지 벌이는 극히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미에현과 구마노시의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기슈광산 강제동원의 진실을 규명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코자 함.

3. 주요내용

- 미에현과 구마노시에 대하여 한국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부지에 대한 부당과세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해 역사적 사죄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진실 규명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활동해 온 민간단체의 노력에 대해 적극 지지의 뜻을 표하고, 미에현과 구마노시가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과 왜곡된 한일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는 내용임.

4. 참고사항

- 기슈광산(일본 미에현 구마노시 소재, 1938~78년 운영)

- 1940~1945년 조선인 1,300여 명 강제노역, 35명 사망
-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1997. 2월 결성)
 - 일본사회단체, 일본역사학자
 - 재일교포 등 300명 구성
- 경과 및 재판일정
 - 2009. 7월 : 한국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부지 구입
 - 2010. 3. 28 : 추모비 건립
 - 2011. 3월 : 미에현과 구마노시 취득세와 고정자산세 부과
 - 2011. 3. 18 : 부당과세 철회 소송 제기
 - 원고 :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 피고 : 미에현, 구마노시
 - 쟁점 : 추모비의 공공성 여부
 - ※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 : 공공적 장소
미에현과 구마노시 : 공공성 없는 사유지
 - 2011. 8. 4 : 1차 재판
 - 2011. 9.29 : 2차 재판
 - 2011. 12월 : 1심 선고(패소), 항소제기
 - 2012. 4월 : 항소심 공판 예정

5. 결의안 제출처 : 청와대, 국무총리실장, 외교통상부장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일본 미에현 지사, 구마노 시장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촉구 결의안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7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 어두운 과거사가 아직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일본에 강제 동원되어 혹독한 강제노역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죽어간 수많은 희생에 대한 진실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3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강제동원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특히, 일본 미에현 구마노시에 소재한 총알제조용 구리를 생산하던 기슈광산에 한국인 1,300여 명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고, 그 가운데 35명이 사망하였음에도 보상은 물론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기슈광산 강제노역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 사업을 위해 활동해 온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에서 구마노시에 추모비를 건립하였으나, 건립 부지에 대해 미에현과 구마노시에서 '공공성이 없는 사유지'라며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반해 당시 같은 광산에 끌려왔다가 사망한 영국군 포로 노동자 16명에 대해서는 구마노시에서 희생자 묘지와 추모비를

만들어주고 매년 위로행사까지 벌이는 극히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미에현과 구마노시의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기슈광산 강제동원의 진실을 규명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 I. 미에현과 구마노시는 한국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부지에 대한 부당과세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해 역사적 사죄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I. 대한민국 정부와 경상북도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하여 하루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I.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진실 규명과 희생자 추모 사업을 위해 활동해온 민간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미에현과 구마노시가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과 왜곡된 한일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2년 3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

